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

#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토론회

---

일시 | 2013년 2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주최 |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여연대

## 목차

발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입법 필요성 / 김남규	4
토론1	담합 관련 시민단체 집단소송 사례와 법제정의 필요성 / 전응휘	10
토론2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의 의의와 쟁점 / 오영중	15

---

발제

#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입법 필요성

---

김남규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I. 경제민주화와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1. 논의의 배경

- 최근 금융사의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조작사건 및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의 권리구제방법 및 소송실무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 이제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그중 재벌의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이며,
- 재벌담합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됨

### 2. 제 안 이 유

- 기업담합이나 제조물 책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현행의 민사소송구조로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에 한정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 소비자 집단에 한정하는 이유는 이미 기업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주주의 집단소송을 보장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존재하고, 집단소송법이 이제 태동단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일단 직접적 피해사례가 많은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고자 함

### 3. 주 요 골 자

가.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송대리인은 집단소송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다.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대표당사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인지액의 상한은 500만원으로 함(안 제6조).

라.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이 법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내 허가(안 제11조, 제14조).

마.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의 예납 및 민사소송법 제700조의 담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일간신문게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권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구성원은 법원이 고지한 권리신고 기간내에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27조).

아. 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안 제37조)

자. 확정판결은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침(안 제39조).

차.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업무를 행함(안 제43조).

카. 분배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권리실행비용, 분배비용 등은 사전에 공제함(안 제47조).

####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 **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문제점**

- 2005. 1. 1.시행 이후 소송 제기실적이 없음.
- 이는 아직 관련판례의 축적이 없어 승패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불한 데 대한 반대급부가 불확실한 문제.
- 원고 측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과 노력,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소송이고,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피고 측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증거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하여 청구원인을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도 요인으로 지목됨.
- 소송허가신청절차, 구성원에 대한 고지절차, 제외신고절차, 분배절차 등 그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대단히 복잡한 것도 소송부진의 요인.
- 여기에다 우리 법원 시스템은 집단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일단 재판과 판결을 미루어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작용.
- 인지대 및 고지, 공고, 감정 등에 관한 비용의 예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표당사자가 예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결국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선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아직 승소가능성도 없고, 성공보수금도 10%대에 못미치는 현실에서 그러한 위험을 수반하고 위 비용을 예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

#### 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증권관련법’이라고 함)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이하 ‘소비자소송법’이라고 함)의 주요한 차이점

##### (1) opt-out방식과 opt-in 방식

- 증권관련법은 소위 opt-out방식으로서 구성원 중에서 집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겠다고 제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기판력을 부여하지 않는 반면,
- 소비자소송법은 소위 opt-in방식으로서 구성원 중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만 판결의 기판력을 미치게 하고 배상금의 분배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제2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39조 등은 이를 전제로 한 규정임.
- opt-out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외신고를 한 자들은 향후 별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외신고도 하지 않고 권리신고도 하지 않은 구성원은 기판력은

미치면서 분배절차 및 별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임.

## (2) 인지액의 상한

- 증권관련법은 인지액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소송법은 인지액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하고자 함.
- 이는 높은 인지액으로 인한 대표당사자나 법무법인의 부담을 덜어주어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3) 기간의 단축

- 증권관련법은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고를 한 날로부터 50일 내에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며, 소송허가결정의 제한기간이 없으나
  - 소비자소송법은 대표당사자 신청은 공고후 2주 이내로 하고, 법원은 공고 후 30일 내에 대표당사자를 선임 및 소송허가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함.
- (사실 대표당사자 신청을 굳이 소장제출 및 소송허가신청서와 다른 시기에 할 이 유도 없어 한번에 모든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함)
- 이는 증권관련법에서와 같이 불필요한 기간을 설정할 경우 소송이 한없이 지연되고 이는 결국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임.

## (4) 소송대리인 제한 규정 삭제

- 증권관련법은 최근 3년간 3건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하였던 자는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소비자소송법은 이러한 규정을 삭제함.
- 이는 우리의 경우 대형로펌은 기업 측을 주로 대변하기 때문에 위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으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소형로펌의 경우 회계사와 팀을 만들어 위 소송을 담당할 여력이 안 되므로, 결국 전문로펌의 출현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조항을 뚫으로써 집단소송 전문로펌의 출현을 막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5)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피고의 즉시항고 규정 삭제

- 증권관련법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 피고의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 소비자소송법은 위 규정을 삭제함.
- 이는 소송허가결정절차 자체가 이미 법원이 원고와 피고를 참여시킨 심문절차로 된다는 점에서 위 심문절차에서 피고는 얼마든지 본안전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소송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6) 소송비용예납의 유예조항

- 증권관련법과 달리 소비자소송법은 소송비용의 예납유예 및 국고금 체당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승패가 불확실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고 및 소송대리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집단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5.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 피해자 모두가 원고가 되는 것은 소송실무상으로 엄청난 번거로움을 야기하여 피해자들로서는 차라리 소송을 회피하거나 법무법인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음.
- 이번 금리담합사태를 소송실무에 비취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선 피해자들은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고, 피해금액도 특정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수백만원을 피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때로는 수만원 가량만 피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현행 소송법에서 그들은 선정자 그룹을 형성하지 않는 한 모두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각각 원고가 되어 법무법인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비용과 인지액을 예납하면서 그중 대표를 정하여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을 협의할 것임.
-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일일이 그 피해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때로는 수만원 피해에 그치는 사람들은 과연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것이고, 그들 모두를 원고로 할 때 위임장작성 및 원고



명단 작성과정에서 도장도 일일이 새겨 날인해야 하고, 심지어 요즘 법원에서는 그들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실무는 더욱 늘어나게 됨.

- 만약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그들 모두가 원고가 될 필요가 없고, 소수 몇몇이 대표로 원고가 되고, 구성원은 단지 법원에 권리신고(이는 opt-in방식을 전제한 것임)를 하면서 자신이 입은 피해사례를 알리고, 법무법인은 소수의 대표당사자를 원고로 하여 국가에서 일정한 액수의 소송비용이나 고지비용, 인지대 등을 보전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됨.

## 6. 입법의 구체적 쟁점

### 가. 적용범위

- 현대사회에서 집단의 피해범위는 소비자피해, 환경피해, 투자자 피해 등 대단히 광범위하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령의 명칭을 '집단소송법'으로 하는 것은 적용범위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환경분야 등에 대하여는 차후 검토할 측면도 있으므로, 그 분야를 소비자의 피해(기업담합으로 인한 피해,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피해 등)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나. 구성원 확정방식

- opt - out방식의 경우, 제외신고를 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구성원에 해당하게 되나, 이들 모두 자동적으로 분배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신고를 한 자들에게만 손해배상금액을 분배하게 규정돼 있고, 그 신고를 못하면 판결의 효력은 받고 권리구제는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 반면, opt - in 방식의 경우, 구성원 신고 내지 권리신고를 한 자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을 받게 하고, 승소할 경우 분배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 신고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판결의 효력을 미치지 않게 되므로 소 제기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추후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다. 소송비용

- 문제는 소 제기시 부담해야 하는 인지액, 공고 및 고지비용, 감정비용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
-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마련하는 법 취지상 인지액은 500만원 이하 등 그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고지, 공고, 감정비용의 예납 역시 아직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당사자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대납할 수도 있으므로, 국고금 해당 규정을 두어야 하며,
- 필요하다면 최소한 인지액이나 고지 및 공고비용은 기업들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고금에서 충당해야 할 것임.

#### 라. 피고의 즉시항고 인정여부

- 원고 측이 소송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피고는 심문절차 및 소송과정에서 본안전 항변으로 얼마든지 그 소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 당사자 심문절차를 통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피고의 즉시항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소송지연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인정하지 말아야 함.

#### 마. 시민단체 등의 원고적격 여부

- 독일과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단체의 소송제기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대표자격의 구체적 요건을 정하여 단체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표당사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단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다만, 단체는 총원에 범위에 포함되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여서 법정소송담당 형태를 고려해 보아야 함. [㉠](#)

## 담합 관련 시민단체 집단소송 사례와 법제정의 필요성

전응휘 / 상임이사, 녹색소비자연대

**1. 불특정 다수 소비자/이용자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별 소송이나 집단분쟁조정 이외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다수 이용자의 피해는 다수 이용자의 집단적인 개별소송을 수시로 야기하고 있다. 2007년 구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침해사건, 옥션, SK컴즈의 개인정보유출사건, KT의 소위 몰래정액제에 의한 불법부당 요금징수사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단말기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공급가 부풀리기에 의한 통신요금 왜곡사건 등은 그러한 대표적 예이다.
- 그 외에도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3세대 이동통신 이후 패키지요금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부당이득수취, 특정 요금제하에서 인터넷 전화서비스 제공금지 등 약관을 통해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으나 약관을 인가하는 통신규제당국이 이러한 부당약관을 승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집단적인 개별 소송의 경우를 보면 이해당사자인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하여(원고의 피해사실입증책임을 근거로 한 원고적격성 시비, 항소 등에 의해 SK브로드밴드 소송은 소제기 이후 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설령 이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동일 피해자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추가소송을 할 수 있는 시효 자체가 제한되므로 소송지연만으로 기업측의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KT의 몰래정액제 사건의 경우 여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사실에 대한 원고의 피해 입증문제의 어려움과 이에 근거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피해구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 최근 LG전자, 삼성전자의 냉장고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소비자피해소송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비자피해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규제당국에 의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고는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개별소송 이외에는 다른 피해구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 현실적으로는 담합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외에도 허위, 과대과장 광고에 의한 소비자피해도 중요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 **2.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실효성 자체가 거의 없어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 원고적격성이 소비자단체 외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회원수 5천명이상의 단체로 규정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극소수단체로 제한되며,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조차 보상받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유인자체가 거의 없다.
- 실제 단체소송례(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침해 약관에 대한 단체소송)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 소송의 허가요건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1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송단체의 적격성 규정조항에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소비자기본법 제70조)로 침해의 현존성, 지속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충돌한다. 실제 소송례에서는 법원은 제74조의 요건에 따라 단체소송을 허가하였다.

- 소송에서 실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조항(소비자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각종 기준이 하위법령에도 없고 기준자체가 미비한데다 기존의 여타 법률이나 여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 문구도 없어 본안소송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단체소송에서는 위법성의 기준이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서 제시되므로 현재로서는 개인정보 단체소송만이 유효한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단체소송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사전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침해행위의 금지만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 수단은 되지 못한다.

### 3. 입법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 적용범위를 소비자의 피해로 한정하더라도 제조물책임, 기업담합 외에도 기업의 허위, 과대과장광고, 부당이득수취, 소비자안전 등으로 범위는 확대해야 한다.
- 시민단체 등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성<sup>1)</sup>을 준용

1)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하여 대표당사자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이 경우에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상시 구성원수 5천명은 소비자단체와 마찬가지로 1천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단 단체가 원고일 경우에는 단체소송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금지청구로 소송내용을 한정한다면, 금지청구 이외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표당사자 규정에 따라 원고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sup>참</sup>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의 의의와 쟁점

오영중 / 변호사·경제학박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1. 법제정 의의

최근 빈발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라도 그 피해액이 작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재 민사소송제도를 통한 손해배상을 받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나아가 대기업(재벌)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시장 선도기업들이 담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주도하고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현행 규제법령만으로 정작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보상의 길은 보장되지 않는다. 즉, 사전적으로 위법행위를 막는 '위하효과'도 적고, 사후적으로 '피해보상'의 길도 없다.

최근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논의가 매우 활발해져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기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유명무실해진 와중에 보다 강화된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 2. 쟁점 논의

가. 당사자를 소비자로 한정할 경우 : 일반법 v. 특별법

; 법제1조, 제2조 등에서 '소비자'를 규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듯함, 나아가 분야를 특정할 것인지 여부

#### 나. 문서제출명령 상대방 미제출시 불이익

-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 및 자료가 공정위에 보관되어 있으나, 자진신고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참고 : 공정거래법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제56조(損害賠償責任)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문서제출명령 위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전환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야 실효성이 높음

#### 다. 증거의 편중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 대다수 증거가 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도입도 고려해 볼만함
- 증거절차 강제를 통한 집단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필요함

#### 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극 도입

- 다수 국민/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행위'인식
-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행정제재와 처벌 등으로 입는 손실보다 클 경우, 법이 무력화됨(반복되고 광범위한 위법행위 만연)
- 제대로 된 손해배상 필요성 높음
- 손해입증의 어려움 해소
- 위법(범죄행위)를 예방하는 위하효과
- 현재 하도급관련법령에 도입



## 라. 손해배상산정과 관련하여

-손해액 추정 내지 인정제도 완화 :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 다수

\*참고 공정거래법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 과도한 손해배상 감정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재 감정비용은 수천만원 소요 됨

-> 손해배상 감정비용 국가채당제도 내지 후납제도 도입필요(특히 공정위로 부터 심결이 난 사건의 경우에는 배상액이외의 모든 요증사실은 입증되었으므로, 남용가능성 없음)

-> 소비자보호원 등 공인기관 내에 '손해감정위원회' 등을 두어 대학교수, 변호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손해배상을 감정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소송 종결 후 위법 기업에 구상하는 방식

## 마. 기타 논의

㉠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시민경제위원회** 02-723-5303 [min@pspd.org](mailto:min@pspd.org)